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1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1항·제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제1항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장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다음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9 골프장 캐디 967 관광통역안내사 958 대리운전기사·택송기사·대리주차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1 방과후학교 강사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86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81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964 유통배송기사 982 퀵서비스기사(이륜자동차로 배송) 983 퀵서비스기사(자가용자동차로 배송) 984 퀵서비스기사(도보·자전거 등으로 배송) 944 택배기사 943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963 화물차주(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985 화물차주(기타 품목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운송)

고용보험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월 보수액은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수출입컨테이너·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4. 노무제공자(제3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1. 이 서식은 건설업 및 벌목업 외의 사업(건설장비운영업 포함)에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및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직종부호: 986)인 경우 작성합니다. 다만, 골프장 캐디(직종부호: 959)는 입직일이 2023. 12. 31. 이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입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처리 절차

